#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957

발의연월일: 2021. 8. 6.

발 의 자: 송재호·강준현·김민철

김영배 · 맹성규 · 민형배

이상헌 · 이장섭 · 조정훈

홍익표 의원(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 밖 청소년 발생의 예방 뿐 아니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역시 중요하며, 주거가 불확실한 가정 밖 청소년의 인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개인별 독립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의 확충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재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정폭력 및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를 퇴소하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의 확충 등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 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연구·조사 등 각종 정 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인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개인별 독립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의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 다.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 사생활 보호, 성교육을 포함한 청 소년쉼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보급하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 라.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청소년쉼터에 가 정폭력 및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 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가정

밖 청소년이 입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도록 함(안 제32조의3 신설)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18세 이상인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 ·취업 등의 지원,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등의 조치를 시행하 도록 함(안 제32조의4 신설).
- 바.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2조의5 신설).

#### 법률 제 호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7973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1항 중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를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제31조에 따른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의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인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개인별 독립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률 제18101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32조의2를 제32조의3으로 하고,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법률 제18101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32조의3(종전의 제32조의2)의 제목중 "계속 이용"을 "이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본문 중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32조의2(청소년쉼터 운영 가이드라인의 마련)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 사생활 보호, 성교육을 포함한 청소년쉼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①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가정 밖 청소년이 입소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야 한 다. 다만, 가정폭력 및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 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 이 되어 입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의4 및 제3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4(자립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18세 이상인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의5(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법률 제17973호 청소년복지 법률 제17973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한 교육・홍보・연구・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 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제31조에 따른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 관의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 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 소년의 인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개인별 독립공간을 마 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 ③ • ④ (생 략) 과 같음)

<신 설>

법률 제18101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32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
소년쉼터 계속 이용) <신
설>

① 청소년쉼터(가정 밖 청소년 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 제32조의2(청소년쉼터 운영 가이 드라인의 마련) 여성가족부장 관은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청소년 의 인권과 권리, 사생활 보호, 성교육을 포함한 청소년쉼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법률 제18101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32조의3(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이용 등) ① 청소년 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가정 밖 청소년이 입소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야한다. 다만, 가정폭력 및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2)</u>	 	 	 	 	 -	 	_	-	_	_	_
	 	 	 	 _	 _	 	_	_	_	_	_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 연 설탕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원인이 되어 입소한 경우에는 그 가정 밖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가정 밖청소년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2. (생략)

②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을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의 입소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신 설>

<u>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u>
1. • 2. (현행과 같음)
<u>③</u>
제2항
<u> </u>
<u>.</u>
제32조의4(자립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쉼터를
<u>퇴소한 18세 이상인 청소년의</u>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

 하여야
 한다.

-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 교육·취업 등의 지원
-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및 관리 지원
-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 구
-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

   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지원이 필요한 청 소년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5(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청소년쉼터를 설치·운 영하는 자는 보호하고 있는 15 세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청소년에 대한 자립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 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 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한다.